

순천대학교 후생사업운영 규정

제1조(목적) 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과 학생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복리와 권익을 증진하여 교육환경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명) “대학회계 후생사업운영”이라 칭한다.

제3조(사업)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2. 교직원식당, 학생식당(푸드코트), 자판기 운영, 체력단련실 및 기타 운영 사업
3. 기타 제1조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회계연도 등) ①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②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예산편성·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회계기관) ①대학회계 후생사업운영 분임계약관과 분임재무관은 입학 학생처장이, 대학회계 후생사업운영 분임지출관은 후생사업 주무과장이 된다.

②대학회계 후생사업운영 분임계약관,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은 예산 회계관계법규 및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세입·세출) 후생사업 식당운영수입과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후생사업 직원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이 대학교 후생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후생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학생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⑤당연직을 제외한 추천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학년초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사업 기본계획 및 예산·결산
2. 후생사업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폐지
3. 기타 학생 및 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계 관계 법규 및 「국립대학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2017.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 후생복지회 정관(‘86. 3. 1.)은 폐지한다.